# 검 토 보 고 서

의 안 번 호 제27호

2017. 6. 8.

건 명	논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자치행정과)		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17. 05. 23.		
소 관 위 원 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17. 05. 23.		

보 고 내 용

## □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당직비를 변경(인상)하여 당직근무자의 처우개선 및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## □ 주요내용

- 당직근무수당 지급 금액 개정(안 제3조제1항)
  - 1인 1회당 **5만원** ⇒ 1인 1회당 **6만원**(1만원 인상)
- 재택 당직근무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 개정(안 제3조제2항)
  -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**3시간 이상** 근무지에서 대기 근무 시 지급 하던 것을 **3시간을 초과**하여 대기 근무 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
  - 1일 1회당 **2만원** ⇒ 1일 1회당 **3만원**(1만원 인상)

# □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당직근무수당을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직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
- 「지방자치법」제22조, 「지방공무원법」제59조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」 제4조, 「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제8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

# 검 토 보 고 서

의 안 번 호 제28호

2017. 6. 8.

건 명	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자치행정과)		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17. 05. 23.		
소 관 위 원 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17. 05. 23.		

보 고 내 용

# □ 제안이유

-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소속 직원들의 요구사항 및 상위법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개정사항을 반영하고
- 특별휴가 규정을 개선하여 직원들이 경조사 휴가제도를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## □ 주요내용

- 가. 임신공무원 장거리 · 장시간 출장 제한 규정 신설(안 제9조제4항)
  - O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모체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·장시가 출장 제한
- 나. 임신공무원 및 출산한지 1년 미만인 공무원 야간·휴일근무 제한 규정 신설(안 제16조제3항)
  - O 임신 중인 공무원 및 출산한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음
  - O 단, 출산한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,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

#### 다. 유산휴가, 사산휴가 기준 삭제(안 제25조제3항)

○ 삭제한 내용을 [별표 3]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에 삽입

### 라. 남자공무원도 1일 1시간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(안 제25조제6항)

O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뿐 아니라 배우자도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사용 가능

#### 마. 자기성찰 특별휴가 분할 요건 완화(안 제25조제9항)

O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 가능하던 것을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(휴가일수는 5일 이상)

# 바. 자녀 또는 며느리가 출산할 때 1일을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규정 삭제 (안 제25조제11항)

○ 삭제한 내용을 [별표 3]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에 삽입

### 사. 모성보호시간 신설(안 제25조제11항)

O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위한 모성보호시간 규정 신설

## 아. 자녀돌봄휴가 신설(안 제25조제12항)

○ 자녀를 둔 공무원이 어린이집,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 시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규정 신설(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1일 가산)

### 자. 포상휴가 신설(안 제25조제13항)

O 재해·재난 등의 격무에 임하거나 대규모 행사 또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5일 이내의 특별휴가 사용 가능

# □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및 소속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특별휴가 규정을 개선하여 직원들이 경조사 휴가제도를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
- 「지방자치법」제22조, 「지방공무원법」제59조,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제7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

# 검 토 보 고 서

의 안 번 호 제29호

2017. 6. 8.

건 명	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자치행정과)					
제안 및 제출자	논	산	시	장	제안연월일	2017. 05. 23.
소관위원회	행정	<b>가</b> え	기위의	원회	회부연월일	2017. 05. 23.

보 고 내 용

## □ 제안이유

- O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와 사회복지인력 확충대책에 따른 2017년 기준 인건비 정원 증가분을 직급·직렬별 정원에 반영하고
- 인허가 관련 민원의 전문적 처리를 위해 부서 간 업무를 조정 함과 동시에 명칭을 변경하는 등 지역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## □ 주요내용

- O 2017년도 기준 인건비 정원 증가분 및 사회복지직 확충에 따른 정원 조정(안 제20조, 별표6)
  - 2017년 기준 인건비 정원 증가분 : 증 8명
  - 정원의 총수 : 933명 ⇒ 941명
- O 인허가 전담 부서와 민원 전담부서로 정비하여 소속 변경
  - 친절행정국 토지관리과 ⇒ 친절행정국 민원토지과(안 제4조제1항)
  - 친절행정국 원스톱민원과 ⇒ 행복도시국 원스톱허가과(안 제5조제1항)

#### O 친절행정국 분장사무 조정(안 제4조제2항제16호)

- 민원·여권·가족관계등록, 건축인허가, 공장등록, 개발민원, 농지·산림민원 ⇒ 민원·여권·가족관계등록

#### O 행복도시국 분장사무 조정

- 중소기업 육성지원 ⇒ 중소기업 육성지원, 공장등록(안 제5조제2항제3호)
- 건축인허가, 개발민원, 농지·산림민원에 관한 사항 추가 (제5조제2항제13호)

#### O 전략기획실 분장사무 조정

- 성과평가·공동체경제추진 ⇒ 성과평가 (안 제7조)

# □ 검토의견

- 2017년 기준 인건비 정원 증가분을 직급·직렬별 정원에 반영하고 인허가 관련 민원의 전문적 처리를 위해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부서의 명칭과 소속을 변경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행정 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
- 「지방자치법」제22조, 제112조,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24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